<양평우체국 공고 제2026-9호>

2026년도 제2회 양평우체국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

2026년도 제2회 양평우체국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1일

양 평 우 체 국 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

응시번호	합격판정	비 고
양평－001	최종합격	기간제 사무원(6개월) (별정우체국 직원)

2. 제출서류안내

가. 가족관계증명서 1통

(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까지 모두 기재, 최근 3개월내 발급)

나. 상세 기본증명서 1통

(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까지 모두 기재, 최근 3개월내 발급)

다. 주민등록초본 1통

(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까지 모두 기재, 최근 3개월내 발급

단, 남자는 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)

라. 최종학력증명서

(졸업증서사본・재학증명서・재적증명서・휴학증명서) 1통

마.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통

바. 경력증명서 1통(공무원 또는 유사경력 해당자 한)

※ 공무원 경력증명서, 병적증명서(초본에 병역사항 포함되지 않을 시), 그 외 유사경력(전문·특수경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, 기타)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 회사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연락처 명시)

사. 「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」에 의한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통 ※ [서식 1] 양식 참고

아. 사진(3cm X 4cm) 1매(인사기록서류 등록용)

자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

3. 채용일시 - 계약 및 채용서류 구비 완료 시 즉시 채용

4. 유의사항

가. 등록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임용을 포기할 경우 임용포기서[서식2]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, 결격사유 조회 등을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임용예정이며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다. 기타 임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등록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서식 1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1. 5.>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 중		kg
허리둘레	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 ) 우: ( )
종 양 질 환			이비인후질환		
호흡기질환			심혈관질환		
소화기질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분비질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부X선 검사		
기 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걸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    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